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21 선고 2021가단2047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 사이에 2020. 12. 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18,099,5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99,5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1. 4. 4. C에게 350만 원을 변제기한 매달 1일, 약정 및 연제이자 연 4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는 2011. 7. 29. 이후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이에 주식회사 D는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40439호로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7. ‘C는 주식회사 D에게 3,478,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29. 주식회사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2021. 2. 8. 현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3,478,921원 및 이자 14,606,893원, 합계 18,099,554원이다.

마.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 12. 5.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F, C가 있었다.

바. E의 상속인들은 2020. 12.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20. 12. 23. 접수 제86283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따른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부산 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C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C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지분(2/7)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 사용한 채무 62,938,310원을 변제하고 단독 상속받았는바, 피고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취소범위 및 가액배상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의 2021. 4. 22.자 답변서에 첨부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포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직후인 2020. 12. 2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G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62,938,3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61,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를 기준으로 한 상속지분 2/7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은 28,017,625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61,0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62,938,310원) × C 상속 지분 2/7,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바, 위 공동담보금액 28,017,625원 보다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8,099,554원이 가액반환 범위가 된다.

4)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18,099,554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18,099,5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정호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남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62.5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남구

대 16481.8㎡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64818분의 564

- 이

상 -

